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시세조례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 세율을 3,000원으로 정하고 있음.
- 우리시는 1999년부터 세율을 3,000원으로 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들은 4,000원으로 과세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아니하므로 자주재정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인상코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함(안 제22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건은 파주시시세조례 제22조(세율)제1항제1호가목에 정한 “개인에 대한 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대다수 도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이는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할 세율은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라고 지방세법 제176조(세율)제1항제1호가목에 정하고 있어 근거법령의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
- 세율의 인상조정 내용에 있어서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개인의 균등할 세율 현황」과 같이 도내 자치단체중 15개 시군이 이미 4,000원으로 조정됐고, 평택·이천·안성등 3개시가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 4,000원과 3,000원을 개인세율로 정하고 있으므로,
- 지난 '99년부터 3,000원의 세율을 현재까지 유지해온 우리시도 이제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나 자주재원확보 차원에서 4,000원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방세법

제 176조 (세율) ①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 가. 시·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 시장·군수가 1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 나. 시·군의 사업장을 둔 개인의 과표세율 : 50,000원

□ 2001년도 시·군별 개인(세대별) 균등할 세율(세액) 현황

시·군별	2001년도 세율(원)	비 고
수 원 시	4,000	
성 남 시	4,000	
고 양 시	4,000	
부 천 시	4,000	
안 양 시	4,000	
안 산 시	4,000	
용 인 시	4,000	
의정부시	4,000	
남양주시	4,000	
평택시	4,000(동지역) 3,000(읍면지역)	
광명시	4,000	
시흥시	3,000	
군포시	3,500	
화성시	3,000	
파주시	3,000	
이천시	4,000(동지역) 3,000(읍면지역)	
구리시	4,000	
김포시	4,000	
포천군	3,000	
광주시	3,000	
안성시	4,000(동지역) 3,000(읍면지역)	
하남시	4,000	
의왕시	3,000	
양주군	3,000	
오산시	4,000	
여주군	3,000	
양평군	3,000	
동두천시	4,000	
과천시	3,000	
가평군	4,000	
연천군	3,000	